## 특별공급 청약 안내[공통]

## 특별공급 청약 체크포인트

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가능

-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?
-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.
-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.
-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공급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- 단,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합니다.(2024.03.25개정)

- 3 이천시 거주자 우선
- 본 아파트의 공급 대상은 이천시 및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나, 경쟁 발생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.

##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자격 요약

구분	일반(기관추천)	다자녀가구	신혼부부	노부모부양	생애 최초		
지역 구분	해당지역 : 이천시 거주자 / 기타지역 : 수도권(경기·서울·인천) 거주자						
주택 소유	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(*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~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)						
세대주 요건		무주택 세대구성원		무주택 세대주	무주택 세대구성원		
청약통장	가입 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 ※ 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은 통장 불필요			가입 기간 12개월 이상,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* 1순위 요건 적용			
신청자격	• 해당 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	•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(임신, 입양 포함)	•혼인기간 7년 이내 •소득 또는 자산기준 을 충족	• 65세 이상의 직계존 속(배우자의 직계존 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	보인 및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 또 단,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배제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 (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포함)  소득 또는 자산기준 충족		
유의사항	•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 주택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,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 ※ 단, 노무모 부양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• 소형·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(2023.11.10 개정) • 과거 특별공급 1회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※ 단,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						

## 특별공급 중복청약 관련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,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 2에 따라 세대원 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구분	청약자간 관계	중복청약 유형	중복당첨 시 처리방법	
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	세대원	특공+특공[가능]	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,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	
	부부	특공+특공 [가능]	접수 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, 접수 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※ 분 단위 접수 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유효	
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	세대원	특공+특공[불가]	1건이라도 당첨 시 모두 부적격	
		특공+일반[가능]	모두유효	